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보조금 예산 교부 확인 및 간주처리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△△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△△과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회계법」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관리 · 집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25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,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,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또한 「예산총칙」 제9조에 따르면,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 후 교부되는 국 · 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△△과는 2022년도 ■■■■■ 인건비 지원 등 4건에 대해 보조금을 수령

하였음에도 간주처리를 누락하였다. (※ 세부내역 별도 송부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△△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